

「서울특별시교육청 도서관 및 평생학습관 도서 기증 활성화 조례안」

제 안 설 명

교육위원회 이소라 의원

존경하는 박상혁 위원장님,

그리고 교육위원회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교육위원회 이소라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교육청 도서관 및 평생학습관 도서 기증 활성화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서울시교육청 도서관·평생학습관에서 매년 수십만 권의 도서가 제적·폐기되거나 대부분 폐지로 매각돼 활용 가치가 제한됩니다.

「공직선거법」상 법적 근거 없는 기부행위 제한 규정으로 무상

배부가 어려워 적극적인 재활용이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국민 권익위원회에서도 공공도서관 제적·폐기도서 재활용 방안으로 도서관 운영 관련 조례 제·개정 추진 등 제도 개선을 권고한 바 있습니다.

이에 도서 기증 활성화를 위한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공직선거법에 저촉되지 않고 해당도서가 필요한 기관 등에 무상기증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했습니다.

조례 제정을 통해 교육감의 책무를 명확히 하고 도서관·평생학습관의 도서 기증 관련 내용을 구체화해 체계적이고 합법적인 도서 기증·재활용 체계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에는 교육감은 도서관의 도서 기증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마련해 지식정보자원의 효율적인 공유를 위한 환경을 조성하도록 책무를 규정했습니다.

교육감이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했으며, 개인, 기관 및 단체의 도서 기증 방법과 기증자에 대해 예우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한, 도서 기증 활성화에 기여한 공적이 뛰어난 개인, 기관 및 단체에 표창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교육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안의 취지를 깊이 헤아리시어 아무쪼록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